

제 호

행정대집행 영장

성명: 불명

주소: 불명

귀하의 불법행위(경작지, 장소: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715-1, 진접읍 내각리 73-15, 화도읍 녹촌리 79-103, 화도읍 녹촌리 79-106, 호평동 산22-25)를 2023년 11월 17일까지 원상회복(철거 등)하도록 공시송달 하였으나,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청(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)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※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대집행 일시	행정대집행 책임자			행정대집행 비용(추산액)
	소 속	직위(직급)	성명	
2023년 11월 27일 이후	서울지방국토 관리청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	도로안전 운영과장	한병동 외 4명 (조한근, 허승필, 김효식, 조민구)	37,895,000원

2023년 11월 23일
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

제 호

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

소 속: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

직위(직급): 도로안전운영과장

성 명: 한병동 외 4명(조한근, 허승필, 김효식, 조민구)

위 사람은 귀하의 도로점용위반행위에 대해 「도로법」 제73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

제2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할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.

2023년 11월 23일
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